

# 평창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남진삼 의원)

의안 번호	253
----------	-----

발의연월일: 2024년 4월 12일

발 의 자 남진삼 의원

찬 성 자 김성기, 이은미, 이창열의원

## 1. 제안이유

우리군 청소년의 신체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인터넷·스마트폰으로부터 초래되는 유해정보의 피해 및 과의존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평생교육 시행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나. 전문기관에 실태조사 및 컨설팅 의뢰(안 제5조)

다.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안 제6조)

라.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등(안 제7조)

마. 장애인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운영(안 제8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장애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다. 입법예고 : 2024. 3. 14. ~ 2024. 4. 3.(20일간), **의견제출 2건**

1) 제출자 : 강원특별자치도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평창군지부

김선희님, 박미숙님

2) 검토내용 : 아래표 참조

3) 향후계획 : 본회의 의결 후 반영여부 서면 송부 예정

입법예고 의견제출	검토결과
<p><b>제안 1. 조례안 제2조(정의)부분에 체육활동 포함</b> 제2조(정의)</p> <p>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인권교육,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b>건강증진 교육, 체육활동 교육</b>, 자립생활기술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p>	<p>조례안 제2조(정의)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상 체육활동을 포함 하고자 하는 의견은 <u>이미 나열되어 있는 건강증진과 관련하여, 통상 ‘건강증진’의 의미는 건강상태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영양·체력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건강상태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건강증진 교육에는 ‘체육활동’을 포함하고 있어 체육활동을 재 기재하는 중복 표현은 수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됨.</u></p> <p><u>또한, 체육활동 사업을 제안하는 관점으로 볼 때 ‘장애인 체육 활동’ 관련 지원 사항은 우리군 조례인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에서 제10조의4(장애인체육 지원)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가 따로 있는 경우에 해당. (불수용)</u></p>
<p><b>제안 2. 조례안 제6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의 지원사업으로서 아래와 같이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생교육 사업 추가’ 제안</b></p> <p>제6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의 제공</li> <li>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홍보</li> <li>3.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li> <li>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역량 강화</li> <li><b>5.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생교육</b></li> <li>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li> </ol>	<p>제안내용을 수용하여 아래와 같이 안제6조제5호를 신설하고자 함.(수용)</p> <p>제6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의 제공</li> <li>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홍보</li> <li>3.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li> <li>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역량 강화</li> <li><b>5. 부모교육 및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홍보</b></li> <li>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li> </ol>

라. 집행기관 의견수렴 : 2024. 2. 29.~ 2024. 3. 12. 아래표 참조.

원안(의회)	수정안(인재육성과)	검토결과
<p>제7조(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등)</p> <p>1. ~~~~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2.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조례안 수정 동의</p> <p>참고의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는 장기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나, 현재 8개 읍면에 평생학습센터가 위치해 있으며 장애인의 특성상 인근 지역에서 쉽고 편리하게 학습터를 이용하는 현 체계가 더 편리한 부분이 있으며, <u>장애인 평생학습 체계가 안정화 될 때까지 현 체계 유지 후 추후 신설 검토</u></p>	<p>조례안 제7조 구문형식은 강제성이 없는 재량사항으로 원안 유지</p>

## 평창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20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평창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및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인권교육,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건강증진 교육, 자립생활기술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창

군 장애인 평생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및 시설 등 기반 확충 방안
3.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4.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평가 및 개선 방안
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및 컨설팅)** 군수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실태조사 및 컨설팅을 의뢰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① 군수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의 제공
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홍보
3.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역량 강화
5. 부모교육 및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홍보
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등)** ① 군수는 「평생교육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장애인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운영)** ① 군수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

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자문을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자문에 응한다.

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평생교육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군수는 협의회 기능을 「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6조에 따른 ‘평창군 평생교육협의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평창군 평생교육협의회’가 ‘협의회’의 기능을 대행할 때에는 그 구성에 있어 당연직 위원으로는 장애인 평생교육 담당 과장이 임명되며 위촉직 위원은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를 포함한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가 2명 이상 위촉되어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16. 5. 29.>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신설 2019. 4. 23.>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29., 2019. 4. 23.>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신설 2021. 6. 8.>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각장애 등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3. 4. 18.>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한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23. 4. 18.>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4. 18.>

**제21조의2(장애인 평생교육과정)**①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환경을 고려

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계속교육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 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기관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별도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은 장애인의 평생교육기회 확대 방안 및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④ 제20조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기관이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① 시·군 및 자치구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군·구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군·구협의회의 의장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군·자치구 및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 5. 29.>

④ 시·군·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20조(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이 연령·능력·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전문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그 학교에 입학하려는 경우 장애를 이유로 입학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모든 교육기관은 교육 대상인 장애인의 입학과 수학(修學) 등에 편리하도록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맞추어 시설을 정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평생교육 지원)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게 「교육기본법」 제3조및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기준, 교육제공인력의 요건 등은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안 제5조(전문기관에 실태조사 및 컨설팅 의뢰)
- 조례안 제6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 조례안 제7조(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등)
- 조례안 제8조(장애인 평생교육협의회 설치·운영)

## 2. 미첨부 근거 규정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비용추계서 작성첨부 미해당(미첨부 사유서 제출)

## 3. 미첨부 사유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추계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 ① 조례안 제5조(전문기관에 실태조사 및 컨설팅 의뢰)

- 전문기관 실태조사: 24년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활용
- 컨설팅: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원 등에서 '시군 맞춤형 평생교육 자문 컨설팅 신청 안내' 공문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므로, 관련 정보를 활용(비예산)

### ② 조례안 제6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홍보:** 24년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따라 평창군 평생학습센터에서도 장애인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관련 예산은 기존 평생학습 프로그램 예산 내에서 장애인 참여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24년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고 보조금을 활용할 계획 추후 년차별로 평생학습 프로그램 기존 사업비를 추가 증액하거나 기존 사업비 내에서 당초 예산 편성
- **장애인 평생교육기간 간 연계체계 구축 및 장애인 평생교육 협의회 설치·운영:** 기존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 실무조정 위원회를 장애인을 포함하여 확대 운영(24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따른 국고 보조금 활용) 및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추후 년차별로 협의회 개최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신규 편성  
※ 총 예산 약 1백만원으로 연평균 5,000만원 이하
-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 24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따른 국고 보조금 활용. 추후 년차별로 관련 예산을 신규 편성

### [비용추계 근거 예시]

- 강사비: (3h)800천원 × 8회 = 6,400천원
- 보조강사비: (3h)120천원 × 8회 × 3명= 2,880천원
- 교재비: 50천원 × 20명= 1,000천원

·홍보비: 800천원 × 1식= 800천원

※ 총 예산 약 1천 2백만원으로 연평균 5,000만원 이하

- ③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등: 기 운영되고 있는 평생학습센터 및 장애인 복지센터를 활용하여 장애인 참여 프로그램 확대(교육 포함),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안정화가 된 후 시설 확충 필요, 추후 필요 시 검토 및 예산 반영

####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연락처	(033) 330 -2020